제주한라대학교 CHEJU HALLA UNIVERSITY | www.chu.ac.kr

CHEJU HALLA UNIVERSITY

2·3년제 전문학사과정

국제화를 향한 미래비전을 실현하는 대학교

2027학년도 제주한라대학교 입학지원서

수험번호 ☐수시 1차 ☐수시 2차 ☐정시 ☐자율 1차 ☐자율 2차 ☐9월 입학

※ 수험번호는 대학에서 기재함

지원사항	지원학과	전문학사과정 (2·3년제)	과						
	전형구분 (해당란에 ○표)	정원 내	일반전형	대학자체	고른기회II				
		정원 외	농어촌 학생	기초생활수급권자 /차상위계층 /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	전문대졸	4년제대학졸 (수료)	만학도 및 성인재직자	장애인 등 대상자	다자녀가정 및 다문화가족	북한이탈주민
지원자정보	성명		주민등록번호							
	주소									
	전화번호	( ) -	휴대전화번호	- -						
	E-mail									
	보호자 성명		추가(긴급) 연락처 휴대전화번호	- -						
학교정보	출신고교	년 월 고등학교 졸업(예정) ※ 학과(과)								
		출신고교 소재지 : 시(도) 고교 대표 전화번호 : - -								
	검정고시	년도 회차 ( ) 지구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								
	대학(교)	년 월 일 대학(교) (학)과 졸업(예정), 년 수료								

대입지원 위반 안내 확인

본인은 대입지원위반 규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, 2027학년도 수시모집 (대학, 교육대학, 산업대학, 전문대학)에 지원하여 합격(최초, 충원)한 사실이 ☐있다 / ☐없다

지원자 확인 (서명)

- 수시모집에서 합격자(최초, 충원)는 수험생의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으로 처리되며, 수시 최초 합격자나 충원 합격자는 정시모집 또는 추가모집에 지원이 불가합니다.
- 수시모집 등록금을 2개 이상의 대학에 납부한 경우, 수시모집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되고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.
- 학년도와 학기가 동일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,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.
- 최종 등록마감 후,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/합격/등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여 "대입지원 위반자"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대학 입학이 취소됩니다.(※모집시기 구분이 없는 '전형기간 자율화 전형'은 해당 없음[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외국인인 외국인, 전교육과정 이수자,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, 2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은 모집시기 구분 없음])

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 여부 확인

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에 **동의함( ), 동의 안함( )**

☏ 미동의자 및 2023년 이전 졸업자, 학생부 온라인 제공 시스템 미설치교 지원자는 학생부 온라인 제공 대상이 아님(학생부 제출)

검정고시 성적 온라인 제공에 **동의함( ), 동의 안함( )**

제공 동의 확인번호

-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자료 온라인 제공에 **동의함( ), 동의 안함( )**

위 본인은 귀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

년 월 일

지원자: (서명 또는 날인)

제주한라대학교 총장 귀하

입력자	접수자 (전형료수납)
㊞	㊞
※ 대학에서 날인함	※ 대학에서 날인함

※ 제주한라대학교는 입학원서의 기재내용을 추후 신입생의 기본 학적사항으로 전산 관리합니다.

2027학년도 제주한라대학교 입학 지원서(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, 입학전형료의 반환 등)

대입 원서접수 및 대입 전형과정에서 수집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처리되며 그 과정에서 대학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기재된 수집 항목, 목적, 보유 및 이용기간 범위 내에서 처리됩니다.

〈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(필수)〉

목적	항목	보유기간
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	이름, 모집단위(지망학과), 전형구분, 주소, 전화번호, 휴대전화번호, 추가전화번호(1개), 이메일, 학교정보(최종학력 구분, 재학/출신 고교명, 졸업(예정)연도, 고교 전화번호)	대입 원서 접수 후 1년

지원자(만14세 미만의 경우, 법정대리인)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※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〈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(선택)〉

목적	항목	보유기간
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	추가전화번호(1~4개), 환불계좌정보(은행명, 계좌번호, 예금주 이름)	대입 원서 접수 후 1년

지원자(만14세 미만의 경우, 법정대리인)는 선택적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※ 선택적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일부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〈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고지사항〉

※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.

개인정보 처리사유	개인정보 항목	보유기간
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	주민등록번호(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: 외국인 등록번호)	대입 원서 접수 후 1년

〈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한 안내〉

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,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학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※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에 따라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합니다.

수탁받는자	내용 및 항목	위탁기간
한국교육학술정보원	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추출(항목 : 이름, 주민등록번호)	대입 원서 접수 후 1년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
	검정고시 대입전형 자료 온라인 추출(항목 : 이름, 주민등록번호, 합격정보, 과목성적정보, 최종 재학 고등학교 정보)	대입 원서 접수 후 1년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
한국교육과정평가원	수능성적 온라인 추출(항목 : 이름, 주민등록번호)	대입 원서 접수 후 1년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
한국대학교육협의회/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	지원방법 위반 및 이중등록 조항 위반자 사전 예방 (항목 : 모집시기, 이름, 주민등록번호(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: 외국인등록번호), 수험번호, 대학코드, 합격/등록 구분, 접수장소, 접수일자, 지원결과, 전형유형, 모집단위명, 계열코드, 출신고교코드, 출신고교유형코드, 졸업연도, 등록일자구분)	대입 원서 접수 후 1년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
	수시 모집 지원 횟수 검색 및 통보 (항목 : 대학코드, 모집시기, 수험번호, 이름, 주민등록번호(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: 외국인등록번호), 모집단위명, 접수시간, 접수장소, 합격/등록 여부)	대입 원서 접수 후 1년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
	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졸업자격 미취득자의 대학 진학 현황 검색 및 후속조치 (항목 : 고교 졸업여부)	고등교육법 제33조 근거 수집 및 활용종료 시 까지
	수능시험 대리응시자 확인을 위한 수능응시원서 요청 명단 수합 (항목 : 학력정보(출신고교, 검정고시, 기타수능응시자격정보), 수능수험번호, 이름)	고등교육법 제34조 근거 수집 및 활용종료 시 까지

〈본인 확인 및 지원 자격, 전형일자 확인〉

- 이 원서는 지원자 본인만 작성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. 차후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학 입학 무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우리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모집요강의 지원 자격 및 최저학력기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? ☐ 확인함

〈대입 허위지원 방지와 지원 자격 조작 방지에 관한 확인〉

- 대입 허위지원을 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- 특별전형 지원 시 지원 자격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.
-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자료를 발견한 경우 지원자가 지원한 타 대학에 이 사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.

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? ☐ 확인함

[입학 전형료(접수비)의 반환 사유 및 금액] –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

①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: 과납한 금액
②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: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
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: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
④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(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) :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
⑤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: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

[입학 전형료(접수비)의 비례 환불]

본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·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그 잔액을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(접수비)에 비례하여 반환할 예정임

[입학 전형료(접수비)의 반환 방법]

①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직접 우리 대학을 방문하여 반환 – 전형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반환신청(위 반환사유 중 해당사항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 포함)
②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– 위 반환사유 중 대학의 귀책이나 단계적 전형에서 불합격한 경우 또는 입학전형 관련 잔액이 발생한 경우
※ 위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반환받을 수 있으나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전산망 이용에 드는 비용을 차감하여 반환하며, 전산망 이용에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

위 내용들을 확인하였습니다. **지원자:** (서명)